

	담당	팀장	대표
결재			

(부분)선택적근로시간제 합의서

1. 회사 기본정보

사업장명	대표자	합의일자	총 근로자
		20 년 월 일	전체 명 / 동의 명

2. 노동조합/근로자대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부서	직책	주소

3. 합의내용

근로기준법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다.

-다 음-

제1조(목적) 이 합의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와 취업규칙에 의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일반적으로 출퇴근을 엄격하게 제한받지 않는 외근직, 연구 조사직, 사무직 등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협의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정산기간) 근로시간의 정산기간은 매월 1일 부터 말일까지로 1개월 이내로 한다.

제4조(총 근로시간) '1일 근로시간 ()시간 ×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휴일, 휴무일은 제외)'로 계산한다.

제5조(표준근로시간) 1일의 표준근로시간은 ()시간으로 한다.

제6조(의무시간대) 의무시간대(CORE TIME)는 ()시 부터 ()시까지로 한다.

제7조(선택시간대) 선택시간대는 시작시간대 ()시부터 ()시, 종료시간대 ()시부터 ()시로 한다.

제8조(가산수당)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고 휴일 또는 야간시간대에 근무하거나, 제4조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제9조(임금공제) 의무시간대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며, 의무 시간 시작시간을 지나 출근하거나 의무시간 종료 전에 퇴근한 경우에는 지각, 조퇴로 처리한다.

제10조(적용제외) 대상 근로자의 범위 중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11조 (유효기간)

시행시기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개정관련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후 1년간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하며, 그 후에도 또한 같다.

합의일자: 20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근로자대표: (서명)

회사명:

(직인생략)